

2026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(2단계) 전문인력 채용 공고문

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 전문인력(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(2단계))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채용예정인원 및 지원자격

구분	채용인원	지원 자격 및 우대조건	
전문 인력	1명	지원자격 (필수조건)	· (응시연령) 만 18세 이상 · (학력/성별) 제한 없음
		우대조건	· 국가유공자(취업 우선 지원 대상자) 및 장애인 · 연구성과 기반 창업 경험 또는 해당 기술 분야에 전문지식을 보유하여, 실험실 창업 전문 지원인력으로 활동한 자격을 갖춘 자 · (창업경력자) ICT·바이오·AI분야 창업기업을 직접 운영하였거나 해당 기업에서 재직한 자 · (기술사업화 경력자) 공공연구기관(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) 및 민간 연구기관(기업 연구소 등)에 소속되어 기술사업화 업무를 수행한 자 ·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거나 전공한 창업지원 경력자 · 벤처투자 업종 종사 경력자 ·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이노베이터/전문위원 경력자
		담당업무	· 혁신창업실험실·창업동아리 밀착 지원,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및 사업계획서·보고서 작성 ※ 시장중심형 연구개발, 투자 유치 등 경영 실무를 맡아 실험실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는 인력

2. 응시원서접수

○ 접수 기간: 공고일 ~ 2026. 3. 10.(화) 15시

○ 접수 방법: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(우편 E-mail, 방문 접수 불가)

- URL: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(<http://snurnd.snu.ac.kr>) → 정보서비스
→ 채용 → 채용공고 → 사업 전문인력 채용공고 → 지원서 작성

○ 제출 서류

- ①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1부(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포함)
- ② 자격증 사본(소지자에 한함,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)
- ③ 어학증명서(소지자에 한함, 공고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)
- ④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(해당자에 한함, 응시원서에 기재된 경력(재직)증명서 모두 제출)
- ⑤ 추가서류(포상, 자원봉사 등)
 - 포상: 장관 이상, 공공기관장, 소속기관장 표창
 - 자원봉사: 최근 1년 이내(20시간 이상)

♣ 서류제출 주의사항

- ① 최종 접수 마감 시간(15:00)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서 제출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 완료 요망
※ 마감일 15:00 이후에는 입력 중이라도 입력 중단(지원 불가)
- ②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의 지원자가 동시 접속할 경우 지원서 작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에 접수 요망(Chrome 또는 Microsoft Edge 웹 브라우저 사용 권장)
- ③ 응시원서에 첨부한 모든 서류 및 기재 사실에 대한 추가 증빙 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
※ 응시원서에 작성한 내용과 첨부한 증빙 서류가 불일치하거나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,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 취소
- ④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경우 공고 마감일(2026. 3. 10.)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
- ⑤ 공인영어(제2외국어 포함) 성적 증명서는 공고 마감일(2026. 3. 10.) 기준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
- ⑥ 관련 분야 경력은 공고 마감일(2026. 3. 10.)을 기준으로 하며, 경력증명서에는 근무 기간, 직위(직급), 부서명, 담당업무(상세기재)를 정확히 기재하고 소속기관의 직인이 포함되어야 함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
- ⑦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·확인하여 오입력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람
- ⑧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 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⑨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할 것

3. 선발 절차(서류심사 → 면접심사)

○ 서류심사: 홈페이지 온라인 입사 지원

※ 평정 요소: 전문성, 자기 계발, 발전 가능성 및 소양, 입사지원서 작성 충실도, 논리성, 상대적 우수성 등

※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내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합격자 결정

○ 면접심사: 질의면접(1대多 면접)

※ 평정 요소: 일반소양 및 가치관,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,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, 발전 가능성 등

4. 채용 일정(안)

- 채용공고 : ~ 2026. 3. 10.(화) 15시
-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: ~ 2026. 3. 13.(금)
- 면접심사 : 2026. 3. 17.(화) ~ 3. 19.(목) 중
- 최종합격자 발표 : ~ 2026. 3. 23.(월)
- 임용예정일 : 2026. 3. 30.(월)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의 게시판(공지 사항-채용)에 별도 공지 예정

5. 임용사항 등

○ 계약기간: 임용예정일 ~ 2026. 12. 31.

○ 보수: 경력에 따른 임금산정(연봉 50,000천 원 이내)

※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포함

○ 임용 제한 사유

1. 「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」 제32조(정년)에 해당하는 자
2. 「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」 제10조(임용 결격사유)에 해당하거나, 「공무원 임용시행령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
3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
4.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
5.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
6. 임용과 동시에 전일 근무(9시~18시)가 불가능한 경우

◆ 「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」 제32조(정년)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.

◆ 「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」 제10조(임용 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로서 자격회복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7.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
9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
10.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
11. 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

◆ 「공무원임용시행령」 제51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준용

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2.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-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.

1.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2.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
◆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7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)

① 법원은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(이하 "성범죄"라 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)부터 일정기간(이하 "취업제한 기간"이라 한다)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·기관 또는 사업장(이하 "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"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 "취업제한 명령"이라 한다)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)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 제2호의 유치원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,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

6. 기타사항

- 서류심사합격자 등 시험 공지 사항은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 및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게시관(채용)에 공지
-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, 최종합격자의 부적격 사유 또는 입사 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최종평가점수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으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- 채용 전형 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, 계획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-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의 착오, 오입력·누락, 연락 불가,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
 - ※ 응시원서 작성 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, E-mail 주소 등 정확히 기재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 자격 제한 및 임용 결격자로 확인되면 합격 취소 처리함
- 채용계획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
- 본 채용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 및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사업 관련 규정에 따름
-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총무기획부(02-880-2076) 또는 기술창업부(02-880-2223)로 문의

2026. 2.

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